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공 무 원 징 계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각급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시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되도록 하고,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친족 여부에 대해 과거 이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‘친족 관계에 있었던’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징계등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,

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요건 개선(안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 일부개정)

-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,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명문화

나.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‘친족 관계에 있었던’ 경우를 위원 제척사유에 포함(안 제15조제1항 일부개정)

다. 징계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(안 제12조제4항 일부개정)

- 징계위원회 직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라. 징계의결등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‘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’ 추가(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0. 12. ~ 11. 2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후단 중 “하며”를 “하며, 제3항 각 호 중 동일 자격요건에 대하여 위촉된 위원으로만 민간위원을 지정해서는 아니된다. 또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5항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제4항 각 호 중 동일 자격요건에 대하여 위촉된 위원으로만 민간위원을 지정해서는 아니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명할”을 “명하거나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1. 징계등 심의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2.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
3.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위원회 회의 구성의 경과조치)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안부터 적용함. 다만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고,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(연임하는 경우 제외)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촉해야 한다.

확인서

1. 인적사항	소속 (현재) (협의 당시)	직위(직급) (현재) (협의 당시)	성명			
2. 비위 유형	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성폭력 범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성매매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성희롱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 제외)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소극행정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성 관련 비위 또는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부정청탁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	
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	
3. 징계부가금	대상 여부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, 대상금액(원, 배)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					
4.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	공적 사항		징계 사항[불문(경고) 포함]			
	포상일	포상 종류	시행청	날짜	종류	발령청
	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	
5. 혐의자의 평소 행실	주의·경고 횟수,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					
6. 그 밖의 사항	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(□ 해당함 □ 해당 없음)					
	※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. 다만, 고의·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					
	퇴직 예정일 정년: . . ., 계급정년: . . ., 근무기간 만료: . . ., 그 밖의 사항(): . . .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					

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 (직급) (성명) (서명 또는 인)

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(직위)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 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<u>하며</u> ,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 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 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·의결에 참 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. ⑥ (생 략)	제4조(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하며</u> , <u>제3항 각 호 중 동일 자격요건</u> <u>에 대하여 위촉된 위원으로만</u> <u>민간위원을 지정해서는 아니된</u> <u>다. 또한</u> ----- ----- -----.
제5조(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 략)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 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 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<u>한다</u> .	제5조(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하며</u> , <u>제4항 각 호 중 동일 자격요건</u> <u>에 대하여 위촉된 위원으로만</u> <u>민간위원을 지정해서는 아니된</u>

⑥ (생략) 제12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 ① ~ ③ (생략)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. ⑤ ~ ⑦ (생략) 제15조(제척 및 기피) ① <u>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(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)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</u> ② ~ ⑤ (생략)	다. ⑥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명하거나 징계의 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---.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제척 및 기피) ① <u>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</u> 1. <u>징계등 심의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</u> 2. <u>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</u> 3. <u>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복무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34